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3 선고 2021가단1164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9.

판 결 선 고 2022. 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6,497,162원 및 위 돈 중 19,995,687원에 대하여 2021. 3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)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손인희

별지